

정보공시대응위원회 규정

제정 2013. 11. 11

1차 개정 2015. 5. 1

2차 개정 2016. 12. 10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정부의 정보공시와 연계한 대학구조조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위해 기획처 산하로 설치한 정보공시대응위원회의 조직, 기능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5. 5. 1, 2016. 12. 10)

제 2 조 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기획처 산하로 설치하며,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5. 5. 1, 2016. 12. 10)

② 위원장과 위원은 기획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15. 5. 1, 2016. 12. 10)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기획처장이 이를 위촉한다.(개정 2015. 5. 1, 2016. 12. 10)

제 3 조 (위원회 업무) 위원회는 기획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(개정 2015. 5. 1, 2016. 12. 10)

1. 교육통계/정보공시 분야별 입력 오류사항 검증
2. 교육통계/정보공시 관련 현업의 애로/장애요인 분석
3. 교육통계/정보공시 오류 방지, 검증시스템 관련 대응 방안 개발
4. 교육통계/정보공시 관련 정부 정책 및 대학 동향 분석에 따른 대응 방안 개발

제 4 조 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획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 5. 1, 2016. 12. 10)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